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운영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문예창작학과와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 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문예창작학과 소속 교수들은 문예창작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 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교육과정) 문예창작학과 교육과정의 운영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사제도에 따르며, 과목개설 및 교·강사 배정에 대해서는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5조 (과목개설) 전임교수 2인 이상 또는 학생회의 의견이 있는 경우 새로운 과목의 개설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전임교수 회의에서 학과 특성 및 시대 변화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학과를 통해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교·강사 배정) 문예창작학 각 분야의 저명한 창작자 및 연구자를 교·강사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문예창작학과 지도교수 선정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사 제도에 따른다.

제5장 자격시험

제8조 (종합학력시험 대상 교과목) 문예창작학과 종합학력시험의 대상은 학과 전임교원이 담당한 교과목으로 한정하고, 석사과정 재학생은 2개 과목, 박사과정 재학생은 4개 과목을 선택해야 하며,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 할 수 없다.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문예창작학과 종합학력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진행하며, 80점 이상을 합격점으로 한다.

제10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문예창작학과 종합학력시험의 면제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해당하는 실적은 종합학력시험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한정한다.

- 1) SCI급 학술지 논문게재(교신저자, 제1저자 포함) 시 3과목 면제
- 2)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교신저자, 제1저자 포함) 논문게재 시 2과목 면제
- 3)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게재 시 1과목 면제
- 4) 전국 규모 작품 발표, 전시, 공연 시 1과목 면제

제11조 (외국어시험 과목) 내국인 학생이 공인어학성적 및 해외 수학(연수)로 인한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시 영어 성적 및 영어권 국가 이외에 추가로 다른 언어 선택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사제도에 따른다.

제6장 학위과정

제12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문예창작학과 재학생은 2학기 말에 학위논문과 학위작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학위 과정을 정하며, 각 과정의 취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학위논문을 선택한 경우는 다음과 취득과정을 거쳐야 한다.
 - 가) 33학점(전공 24학점, 연구지도 9학점)을 이수하고 평균 80점 이상을 획득
 - 나)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
 - 다) 학위논문 작성 후, 정해진 심사과정 통과

- 2) 학위작품을 선택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취득과정을 거쳐야 한다.
- 가) 학위작품은 문예창작 관련 분야에서 권위 있는 공모전 수상실적을 갖춘 학생만 선택할 수 있다.(전국 규모 일간지 신춘문예 당선자, 권위 있는 문예지 신인상 당선자, 전국 규모 문화예술단체 주관 공모전 상위 입상자)
 - 나) 33학점(전공 24학점, 연구지도 9학점)을 이수하고 평균 80점 이상을 획득
 - 다)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
 - 라) 학위논문 작성 후, 정해진 심사과정 통과

제13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3학기 말까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고 사유서를 작성하여, 전임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장에게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4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매학기 연구지도세미나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에게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예비발표) 학위논문 혹은 학위작품을 심사받기 위해서는 심사신청 전 예비심사와 중간발표(학술대회) 등의 예비발표를 거쳐야 한다.

제16조 (논문심사위원) 단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의 논문심사위원 구성은 일반대학원 학사제도에 따르며, 석사과정 학위작품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17조 (논문대체 심사절차) 문예창작학과의 석사과정 학위작품 심사는 학위논문 심사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다.

제18조 (논문대체 제출) 문예창작학과 학위작품의 규격과 편집은 학위논문에 준하며, 중앙도서관 제출 및 학위논문 온라인 등재를 하지 않고, 학과에서 3년 동안 보관한 뒤 폐기한다.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9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0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